

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10월 24일

강 원 도 의 회 의 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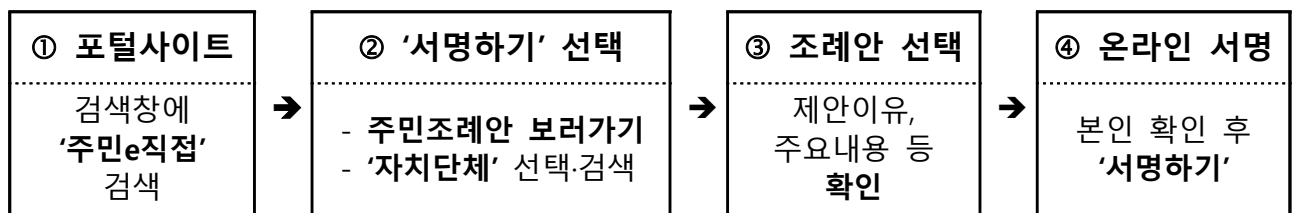
1. 청구 조례명 : 강원도 학생인권 조례
2. 청구인의 대표자
 - 성 명 : 박 종 훈
 - 주 소 :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: 2022. 10. 24.
4. 서명요청기간 : 2022. 10. 24. ~ 2023. 4. 23.
5. 연서 주민 수 : 6,667명 이상(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/200이상)
6. 조례 제정 청구취지
 - 강원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함.

7. 주요 내용

- 강원도 학생 인권에 대한 권리 명시
-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참여단 등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

8. 전자서명절차 안내

-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주소 : 주민e직접 www.juminegov.go.kr
- PC 또는 모바일 서명 가능



- 전자서명 취소 방법
 - ①~③번 과정은 동일 → ④번 과정에서 '서명취소' 버튼 선택

9. 기타 행정사항

- 본 공고(공표)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도의회 의사관실 의사팀(담당자 최승진 ☎033-249-517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조례안 1부. 끝.